

부속서 2-마

화학물질

1. 세계무역기구협정,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의무를 상기하고, 각 당사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 가. 개방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수립하는 것
- 나.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 다. 공중보건 및 환경의 높은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
- 라.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동물 실험을 축소하는 것
- 마.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
- 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 사.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우수 관행을 국제적으로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

2. 양 당사국은 제1항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화학물질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법,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밖의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규제하고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제공하는 것
- 다. 법령의 채택 및 이행, 위험성 평가, 그리고 비밀 사업정보의 등록, 허가, 통보 및 처리에 관하여 우수 관행을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적용하는 것, 그리고
- 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더욱 조화된 접근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범 실험실 관행 및 실험지침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갖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4.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제3항에 상정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작업반이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

된다. 화학물질 작업반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언급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 2년에 한 번 회합한다.